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3
----------	-----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상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상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조례안 제3조, 제4조)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 정비(조례안 제7조)
- 다. 자치법규(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사항 반영(조례안 제9조)
- 라. 회계공무원 지정 확대(조례안 제10조)
- 마. 조직개편 반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정비(조례안 제12조)
-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기 당연직과 위촉직 구분 반영(조례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10.29. ~ 2020.11.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의견 반영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 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를 “(**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이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 없이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사용이 가능하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평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 조치

제9조제2항 중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팀장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재무·지출 회계업무팀장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포함한”을 “당연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라.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이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상계상 신청 없이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자재구입과 장비 등의 사
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
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
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
시설의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시설 설
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
강

3. 재난피해시설(평창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
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
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
의 응급복구 및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
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하
다.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
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
방비 부담분은 사용이 가
능하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
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
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
는 비용은 제외한다.

2. 평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
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
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
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
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1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생략)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팀장)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
-----.

제10조(회계공무원) ① -----

-----.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팀장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

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재무·지출 회계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담당국장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도록 해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사람

2. 위촉직 위원 : 재난 또는 긴급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용어 변경 및 기금의 용도 정비, 자치법규(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 등의 개정 조례안이므로 예산 별도조치 필요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연락처	(033) 330 - 2019